

증평 효인원 노인인권 보호 지침

1. 신체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

- 1)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,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다.
- 2)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, 노인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
- 3)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다.

2.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
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, 질병과 치료, 통신,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 한다.

3.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
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,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,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.

4.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
- 1)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,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2)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,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3) 노인의 문학적 다양성을 인정하고,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5.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관리

- 1)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, 이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.
- 2) 다만,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준다.

6.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- 1)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(예 : 건의함, 운영위원회 등)를 마련하여 시행한다.
- 2)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.
- 3)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
20 년 일

입소자 (서명)

보호자 (서명)